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0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박덕흠·이명수·김석기

유상범・이 영・최승재

金炳旭・조명희・추경호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표준 등) 등이 표준화 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 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진료비용의 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동물병원은 제15조의2에 따라 고시된 진료항목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운영 또는"을 "운영, 조사·연구비용(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
	여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
	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
	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20조의3(진료비용의 고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동
	물병원은 제15조의2에 따라 고
	시된 진료항목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하여야 한다.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	제29조(경비 보조)
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수의사회의 <u>운영 또는</u> 업	<u>운영, 조사·</u>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연구비용(진료항목 등의 표준 화를 위한 조사 · 연구를 포함 한다), 그 밖의-----